

Certificat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개인 기업)

(유효기간 2023.04.01~2024.03.31)



CONTENTS

01	온라인 자료 제출 (1 ~ 9p)	
02	제출 자료 조회 (10 ~11p)	
03	신청서 작성	3-1 자료제출 가능한 기업 (12 ~ 17p)
04	진행 상황 보기 (25 ~26p)	
05	과거 규모확인 추가절차 진행 (27~29p) ※'소상공인유예경토' 대상 기업만 진행	
06	확인서 출력 / 수정 (30 ~ 32p)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저장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회원가입 후 STEP 1~5 사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온라인 자료제출 :

1. 자료제출사이트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제출(WEB제출)
2.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규이용자 등록한 후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자료제출
3.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파일 제출 (국세청에 신고한 동일파일)

STEP 2. 제출자료 조회 :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조회가능

STEP 3. 신청서 작성 : 자료제출 완료 후 신청서 작성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STEP 3 부터 진행 가능.)

STEP 4. 진행상황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오류 발생시 오류 발생 사항 확인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필수)

STEP 5. 확인서 출력/수정 :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이 가능



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 -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



아이디
비밀번호

☐ 아이디저장

로그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중소벤처24 EasyPass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제출서류 안내문다운받기

공지사항

- ☆공시대상 기업 및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기업 확인... 2023-06-02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안... 2023-06-02
-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 2023-05-16
- ★ 긴급공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제출량 증... 2023-03-29
- ☆☆☆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 2023-02-28
- ☆☆ 2023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 2023-02-28
- ☆ 2023년 소상공인 유예검토 안내 ☆ 2023-02-28

자주하는 질문

- 소상공인 유예검토 진행상태로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 2022-07-11
- 금융 및 보험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자료제... 2022-04-12
-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호... 2022-05-20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2021-11-17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2021-05-1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2021-05-12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2021-07-07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개인기업 제출자료

- 2020, 2021, 2022년 소득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 2022년 부가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 2022년 원천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 2022년 소득세는 2022년 부가세로 대체하여 진행,
-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022년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담당자 명함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제출하여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KoDATA

07237 서울시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코데이터빌딩, KoDATA | TEL: 02-3215-2674
Copyright (C) KOREA RATING & DATA. All Rights Reserved.

WA
Korea

온라인 자료제출

자료제출(법인기업)

자료제출(개인기업)

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	자료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온라인자료제출
1. 최근 3개년 (2020, 2021, 2022) 재무제표 2. 최근 1개년 (2022년 1월~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제출 하지 않도록 함 종합소득세 신고이전인 기업은 2022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2022년 재무제표를 대체하여 제출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으 로 대체하여 우편으로 자료제출 후 사업장 주소 관 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여 발급	자료제출 방법 1.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2.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클릭 3. 자료제출 사이트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 서'로 로그인 4. 제출자료 선택 → 전송 주의사항 *모바일 제출불가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불가 ※ 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 수정/기한 후 신고자료 온라인 제출 불가(우편접수) ※ 기업에서 직접 자료제출하는 경우, 자료전송 프 로그램에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된 [대표자 개인 공 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 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소상공인 유예 토대상기업 등 제외)	온라인자료제출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 (WEB제출) 온라인자료제출 매뉴얼 자료제출매뉴얼(WEB제출) 위의 온라인자료제출(WEB제출)이 되지 않거나, WEB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자료제출프로그램 을 설치하여 자료제출 가능 자료제출프로그램 수동설치 전자신고파일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

1. '자료제출 (개인기업)' 탭 클릭

2.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클릭

- '온라인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클릭 하여 팝업 창이 뜨면, [증빙자료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자료제출사이트로 이동
-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정보 등록 후 자료 제출

A. 자료제출 제출프로그램 수동설치

- '온라인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이 되지 않을 경우 클릭하여,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규 이용자 등록한 후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자료제출

B. 전자신고파일 제출프로그램 수동설치

-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클릭하여 수동으로 설치
-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파일 제출 (국세청에 신고한 동일 파일)

자료제출 사이트 이동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방법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증빙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 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온라인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1 **증빙자료 제출하기**

이동메뉴얼

- 온라인 자료제출 이전 '이용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웹(Web)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자료제출하기' 메뉴에서 수동으로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FIND 홈페이지 접속 → 국세청 등록 인증서 로그인 → 증빙자료 선택 → 제출 완료

2 **보안프로그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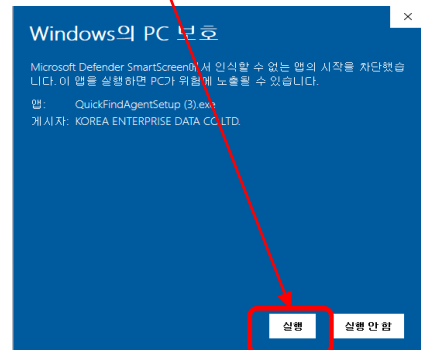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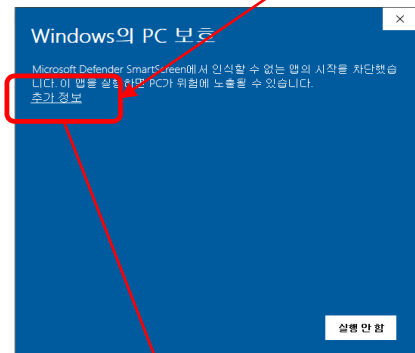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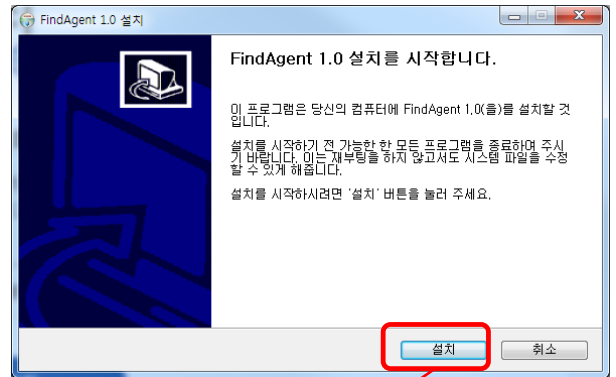
FindAgentSetup.exe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주세요.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설치해주세요.
모든 파일을 설치완료 이후에는 반드시 세로고침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프로그램 미설치 **3** **온 다운로드**

4 **세로고침**



공지사항 +

[사명 변경 안내] 한국기업데이터가 'KoDATA'로 다시 태어납니다.

1 어디로 제출할까요?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누구의 자료를 제출할까요?

어떤 자료를 제출할까요?

어디로 제출할까요?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

증빙자료를 전송받을 기관을 선택해주세요.

전체 은행 공공기관 기타 가나다순 ↓

KoDATA 한국평가데이터	KoDATA 신용보증기금	KB국민은행	신한은행
1 ☒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한국씨티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SGI서울보증보험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 확인

1. 어디로 제출할까요? 페이지에서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 클릭
2. 확인 클릭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금융인증서 X)★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이용자 정보 입력 후 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세요.

☐ 법인사업자 **1** ☒ **개인사업자** ☐ 세무대리인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2** - -

주민등록번호 **3** -

담당자명 **4**

휴대폰번호

5 ☐ **약관동의(전체)**

☐ FIND시스템 이용약관
☒ 서비스 이용약관 보기 ▼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 보기 ▼
☐ 중기현황시스템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 활용 · 제공 동의

기업(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
중기확인서 발급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기업규모 산정 및 해당기업의 중기확인서에 대한 검증용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 위탁운영 기관인 KoDATA(한국평가데이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활용 미동의 또는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외감기업은 동의해제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단계로 **6** 약관동의

1. 개인사업자 유형 선택

- 기업 유형을 [개인사업자] 로 선택합니다.

2. 사업자 번호 입력

- 로그인 할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입력

- 제출할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4. 담당자 명 및 휴대폰번호 입력

5. 약관동의 체크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약관을 동의합니다. 약관 동의가 이루어져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보기>를 클릭하여 약관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6. [약관동의]버튼 클릭

☐ 약관동의(전체)

☒ FIND시스템 이용약관

☒ 서비스 이용약관 보기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보기

☐ 중기현황시스템 기업(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 동의

기업(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

중기확인서 발급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기업규모 산정 및 해당기업의 중기확인서에 대한 검증용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 위탁운영 기관인 KoDATA(한국평가데이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활용 미동의 또는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외감기업은 동의해제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자명	연료일	정채등급	발급기관
	2023-05-12	은행/보통용	HNB
	2023-06-15	은행/보통용	KMB
	2023-05-12	은행/보통용	HNB

※ 인증서 (이전 인증서인가요?)

인증서 암호: 로그인 가상키보드 적용 인증서 찾기

① 주의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자 범용 인증서 사용불가)

이전 단계로

약관동의

누구의 자료를 제출할까요?

[개인사업자()] 님의 정보를 전송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운영 중인 전체 사업장 정보를 함께 제출합니다.

기업명: []

대표자명: []

대표자 주소: [] 조회

처음으로 ④ 확인

1. 로그인 할 사업자의 인증서 선택

- 표기된 인증서 목록 중에서 로그인 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암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누구의 자료를 제출할까요? (사업자 정보확인)

- 제출 대상의 사업자정보가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1) 사업자 번호 2) 기업명 3) 사업장 주소

4. [확인] 버튼 클릭

1

어떤 자료를 제출할까요?

이용하고 계신 사용자의 자료를 전송합니다.

기본제출자료 ▼

☒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설정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설정

☒ 원천세 신고자료

설정

☐ 전자신고파일

이전 단계로

2

제출하기

1. 어떤 자료를 제출할까요?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수 자료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별도 변경 없이 그대로 제출)

- 기존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설정]을 클릭하여 이미 제출한 자료는 삭제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클릭

※ 자료제출 시 주의 사항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수정, 기한 후 신고자료의 경우 자료제출 불가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불가**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증, 2022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담당자 명함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 할 것.

1 제출정보확인

아래의 내용대로 전송 하시겠습니까?

기업유형	개인사업자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자명	홍■■■■■
전화번호	■■■■■
제출처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

이전 단계로 **2 확인**

3

사업자의 제출 자료를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KODATA

4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메인으로 **5 결과조회**

1. 제출 정보 확인

- 제출 대상의 요약 정보를 보여줍니다.

2. '확인' 클릭

- 클릭하면 증빙자료 전송을 시작합니다.

3. 제출 경과 안내

- 제출자료의 진행 경과를 알려줍니다. 모두 전송 완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4. 제출 접수 완료 안내

- 제출 대상 자료가 접수 되었을 경우 안내되며,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자료 접수가 완료된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으로 다시 접속하여, [STEP 02 제출자료조회] 메뉴에서 자료가 정상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과 조회

- 자료제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 T -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범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



아이디
비밀번호
☐ 아이디저장
로그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제출자료
조회

STEP 03
신청서
작성

STEP 04
진행상황
확인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챗봇

‘제출자료 조회’
클릭

유발기

공지사항

☆공시대상 기업 및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기업 확인...	2023-06-02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안...	2023-06-02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	2023-05-16
★ 긴급공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제출량 증...	2023-03-29
☆☆☆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	2023-02-28
☆☆ 2023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	2023-02-28
☆ 2023년 소상공인 유예검토 안내 ☆	2023-02-28

자주하는 질문

소상공인 유예검토 진행상태로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	2022-07-11
금융 및 보험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자료제...	2022-04-12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호...	2022-05-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2021-11-17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임착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2021-05-12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2021-05-1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2021-07-07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1811-6508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에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세

중소벤처기업부

KODATA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WORKNET

운영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자동수집거부 저작권정책 ▲ 정보의 자유출 및 자료제공은 할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KODATA

0723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1, 코데이터빌딩, KODATA
Copyright (C) KOREA RATING & DATA. All Rights Reserved.

SMINFO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발급절차 안내 +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1 제출자료 조회

제출자료 조회

자료조회

원천징수_전자신고(개인,법인) ▾

제출기간조회

2022-06-21

2023-06-21

검색

No	업체명	사업자번호	제출자료 기준일	제출자료명	자료제출일	제출자명
1	힘내세요 중소기업	000-00-00000	20220101~20221231	원천징수_전자신고	2023/04/06 17:28:54	

« < 1 > »

주1) 온라인으로 자료제출 후 시스템 반영시까지의 일정시간 (10분~30분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집중적으로 제출되는 3월 중순~4월 말까지는 최소 1시간 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주2) 제출기간조회 시 기준일자를 최대 과거날짜로 하시어 기존에 제출된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자료조회(온라인 제출프로그램) 선택

2. 조회할 자료 선택 및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3. 제출된 자료조회 확인

- ①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재무제표(개인,법인)
- 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부가세매입매출상세(개인)
- ③ 원천세 신고자료 → 원천징수_전자신고(개인,법인)

- ① 자료조회 항목 [재무제표(개인, 법인)]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 조회된 재무제표 자료내역이 최근 3개년(2020년, 2021년, 2022년) 확인 →
[재무제표] 버튼 클릭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수치 모두 확인

- ② (개인사업자만) 자료조회 항목 [부가세 매입 매출 상세(개인)]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 부가세매입 매출 상세 내역 최근 1개년(2022년) 확인 必
-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누락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기업(본사)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서류 접수

- ③ 자료조회 항목 [원천징수_전자신고(개인, 법인)]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 조회된 원천세 자료내역이 '22.01월~'22.12월(12개월) 맞는지 확인
→ [원천징수_전자신고] 버튼 클릭 → 12개월 근로자 인원 확인

* 오프라인(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자료조회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음
* 원천세 신고자료 등의 자료가 누락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기업(본사)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서류 접수

자료제출 가능 기업 신청서 작성 절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

아이디

비밀번호

☐ 아이디저장

로그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중소벤처24 EasyPass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제출자료
조회

STEP 03

신청서
작성

STEP 04

진행상황
확인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챗봇

'신청서 작성'
클릭

공지사항

☆공시대상 기업 및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기업 확인... 2023-06-02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안... 2023-06-02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2023-05-16

★ 긴급공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제출량 증... 2023-03-29

☆☆☆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 2023-02-28

☆☆ 2023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 2023-02-28

☆ 2023년 소상공인 유예검토 안내 ☆ 2023-02-28

소상공인 유예검토 진행상태로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전... 2022-07-11

금융 및 보험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자료제... 2022-04-12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호... 2022-05-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2021-11-17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2021-05-12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2021-05-12

사회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2021-07-07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1811-6508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관련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KODATA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WORKNET

운영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자동수집거부 저작권정책 ▲ 정보의 재유출 및 자료제공은 할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KODATA

0723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3F 데이터빌딩, KODATA

Copyright (C) KOREA RATING & DATA. All Rights Reserved.

KOREA RATING & DATA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 범위


[홈](#)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작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발급절차 안내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신청서 작성

 제출자료의 사실관계에 대한 동의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시 신청기업의 정보 및 경쟁입찰제외 여부 확인서 등을 허위 또는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 제출 (동 시스템 신청서 및 화면에 직접 입력한 사항 포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및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자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위반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 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 신용정보는 중소기업 여부 판단 및 공지사항 전달 등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성명, 고유식별정보,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처 정보

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 3자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 신용정보는 중소기업 판단 및 공지사항 전달 등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받는 자

공공구매종합정보,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등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성명, 고유식별정보,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처 정보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를 수집 및 홈페이지내 공개를 합니다. 수집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확인 여부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정보 등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전체동의

 Q :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시

 나의정보에서 기업정보를 입력하세요.
나의정보를 수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보입니다.

 A : [나의 정보]에
서 기업정보 입
력 후 재접속 바
랍니다.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신청서 작성

*[온라인자료제출]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에서 제출자료완료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서를 작성
(직전, 당해연도 창업기업, 3개년 간편장부기업, 분할·합병, 관계기업보유 기업 제외)

* 물음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기업명 *	함내세요중소기업	대표자명 *	홍길동
기업유형 *	개인기업	본점사업자등록일	2021-01-01
본점사업자번호 *	123-45-12345		
*고유번호입력불가			
본점사업장주소 *	07233 우편번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함내세요중소기업		
최근사업기간말	2022-12-31		
확인서용도 *	그 이외		
주업종 *	I-숙박및음식점업		
2022년 발생매출액 큰 업종 *	I-숙박및음식점업		
(직전년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창업기업 및 업종이 1개인 경우 위의 업종과 동일하게 선택.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상세페이지 참조		

주의

- ① 폐업한 사업자는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② 본점사업자 등록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일'
- ③ 최근사업기간말로 확인서 유효기간이 판단되어 집니다. 신청서 작성 이전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유효기간에 맞는 최근사업기간말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④ 주업종 판단이 어려울 경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해당 여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하지 않도록 함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여부

☒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

☐ 간편장부대상기업

- * 최근 3개년 연속으로 간편장부대상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 * 최근 3개년 이내 복식부기대상이 된 적이 있는 기업은 제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 근로소득 간이세액신고 인원 없이 일용직만 신고하는 기업, 대표자 1인기업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최저액 미달 등으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이 해당

6

저장

1. 본점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사업자등록일"
(개업 연월일 아님)

2. 최근사업기간말일 :
2022-12-31 (고정)

3. 확인서 용도:

공공입찰용 선택

4. 주업종 선택 :

M-전문,과학및 기술서
비스업5. 2022년 발생매출액
이 가장 큰 업종M-전문,과학및 기술서
비스업

- '저장' 클릭

- 다음 페이지 이동

※ 나머지 항목은 선택
하지 말 것.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일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해당여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가족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해당하지 않음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대지분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용도가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받는 경우에 나오는 페이지.

[그 이외]인 경우는 나오지 않음.

1. 위 항목들의 해당 여부 확인하여 체크 후 "예" 클릭

2. 제출자, 대표자 이름 입력

3. 저장 클릭

(공공구매 종합정보-당일반영 조달청(나라장터)-익일 반영)

4. 다음 페이지 이동.

※ 법령 해석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명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참여자격 취소 또는 징지 및 1년이하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에 처할 수 있으며, 동 법 제35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의 유의사항 및 각 항목의 참여부를 잘 확인하셨습니다?

1 ☒ 예 ☐ 아니요

작성일자 2023-04-01

2 제출자 홍길동

대표자 홍길동

3 이전

4 저장

다음

저장하였습니다. 화면 아래쪽의 다음을 선택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당일), 나라장터(익일)반영됩니다.

확인

상시근로자 현황

📅 기준일자: 2022-01-01 ~ 2022-12-31

📝 본점 상시근로자

(단위:명)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연평균
1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인원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150	12
2 연구전담 요원	0	0	0	0	0	0	3	3	3	3	3	3	18	1
차감대상 임원													0	0
3 월소계	12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32	11

본점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인원은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이 자동반영 되므로 수기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해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인원이 '1월~12월' 모두 반영(입력)된 경우 다음단계로 이동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중소기업 판단에 중요한 항목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인원의 합보다 차감대상(임원, 연구전담요원)의 합이 커, 연평균이 '0' 될 경우 임원의 수를 조정하여 최소 '0'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3개월 이내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가 있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차감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인원의 간이세액 신고인원에서 '연구전담요원'과 '임원'을 차감하여 판단합니다.

임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인원 중 아래에 해당 하는 자 (중도퇴사한 임원제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 * 그 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 집행자 ('임원'란은 '전체 직원 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인원을 그대로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구전담인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신청기업이 신고한 인원이 자동 반영됩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대상자의 경우, 월별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반기 신고 근로자수의 차이로 인해 기업구분이 달라지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지점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할 경우 신청기업이 직접 수기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수기로 입력)

이전

저장

다음

1. '해당 원천세 신고 자료' 제출 완료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인원

(해당 칸에 인원이 안 떠있다면 해당 월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임.)

2. 연구전담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공받은 데이터 자동반영 되므로 입력 안됨

* 개인 기업의 경우 차감대상 임원이 없으므로 **대표자 본인이 대표라고 임원에 숫자 입력하지 말 것.**

3. 월 소계가 마이너스 값이 뜨면 안됨

4,5. 반영된 인원수 값 확인이 끝났으면 '저장', '다음' 클릭

신청자정보

1

신청자성명 *	홍길동	휴대전화번호 *	010	0000	0000
회사전화번호 *	02	0000	0000		
이메일 *	test	@			
	kodata.co.kr	직접입력			

2

이전

저장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한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지배·종속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누락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지원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3

신청서 제출

확인서가 자동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상담: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센터)

온라인 자료제출: 1811-6508

신청서 작성관련: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는 [홈페이지 상단]-[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발급안내 문의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 성명에 2명 이상의 사람을 입력하거나 이메일에 마침표(.) 혹은 특수문자를 입력할 경우 오류 발생하므로 입력 시 유의할 것

2. 저장

3. 신청서 제출 클릭



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 T -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



아이디

비밀번호

☐ 아이디저장

로그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제출자료
조회

STEP 03



신청서
작성

STEP 04



진행상황
확인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챗봇

제출서류

'진행 상황 확인' 클릭

공지사항

☆공시대상 기업 및 소속회사로 변경. 통지된 기업 확인...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안...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긴급공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제출량 증...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
☆☆2023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
☆2023년 소상공인 유예검토 안내 ☆

2023-06-02
2023-06-02
2023-05-16
2023-03-29
2023-02-28
2023-02-28
2023-02-28

소상공인 유예검토 진행상태로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
금융 및 보험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자료제...
기준 담당자가 되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임차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2022-07-11
2022-04-12
2022-05-20
2021-11-17
2021-05-12
2021-05-12
2021-07-07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1811-6508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KODATA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전문 상담원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WORKNET

운영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수집거부 저작권정책 ▲ 정보의 재유통 및 자료제공은 할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KODATA

0723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길 21, 코데이터빌딩, KODATA

Copyright (C) KODERATING & DATA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발급절차 안내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진행상황 확인

진행상황 조회

1. 진행상황이 [자료제출 확인요청] 및 [자료미제출]인 기업은 [결과보기]-[오류]확인을 통해 누락된 자료를 다시 제출 하신 뒤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기업이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자료를 제출 할 경우 자료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조회

2022-12-26

2023-01-26

검색

진행상황 결과

발급일자	진행상황	상세내용	중기확인결과	결과보기	비고
2023-01-26	완료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완료	

2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

관계기업, 직전, 당해 합병, 분할기업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 불가

※ 서울 소재 기업은 '관계기업 오류' 및 '합병, 분할기업 오류' 인 경우 관련자료를 우편 접수 부탁드립니다.

※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 을 통해 관련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자료제출확인 여부 및 진행상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진행상황이 '관계기업 오류' 및 '합병, 분할 기업 오류' 인 경우 처리 절차
아래 [오프라인 증빙자료 제출안내]를 클릭하여, 관련 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제출

오프라인 증빙자료 제출안내

* 관계기업, 직전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제출

2. 진행상황이 부적합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3. 진행상황이 담당자 접수일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가 확인중인 것임
4. 진행상황이 '판단불가'인 경우 처리절차

'비고'란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판단불가건을 삭제처리하신 후 다시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
(상사근로자가 연평균 '1', 최근사업기간만일, 출자기업정보 오기제로 인한 판단불가로 나온 경우는 반드시
오기제한 정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확인서 발급됨)

5. 진행상황이 외국법인 오류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안내

1.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클릭

2. 진행결과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진행상황 확인

발급신청

발급절차 안내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 온라인 과거자료제출 가능 기업

2. 일반기업이 [관계기업, 직전.당해연도 분할.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자료를 제출 할 경우 자료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조회

2022-12-26

2023-01-26

검색

진행상황 결과

발급일자	진행상황	상세내용	중기확인결과	결과보기	비고
2023-02-16	소상공인유예검토	소상공인 유예검토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태로 오른쪽 단계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연도 작성방법 창업 이외 연도 작성방법		1단계 과거자료제출 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3단계 세로고침 오류확인	

온라인 자료제출

자료제출(법인기업)

자료제출(개인기업)

추가 제출서류목록(소상공인 유예 검토 필요 기업)

※ '소상공인 유예 검토 필요' 기업이 아닌 경우 추가 제출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상 기업만 추가서류 제출)

제출서류	자료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	온라인 자료제출
1. 최근 4,5개년전(2018,2019) 재무제표 2. 최근 2,3개년전(2020,202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료제출방법 1.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2.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 (WEB제출) 3. 자료제출 사이트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사'로 로그인 4. 제출자료 선택 → 전송	온라인 자료제출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 (WEB제출)

<중기확인 결과>

a. 소상공인 유예검토 -> 당해연도 판단결과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인 경우에 나오는 페이지
=>과거 재무제표 있으며, 원천세 신고한 기업의 경우 과거 자료제출
이 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하여 단계별 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1단계 과거자료제출] 클릭

2. 추가 제출서류(과거) 확인

- 2018,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재무제표)
- 2020,2021년 원천세 신고자료(24개월)

3.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WEB제출) 클릭하여 과거자료 온라인 추가 제출

- 온라인 자료제출 방법은 버튼 하단 자료제출 매뉴얼 참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진행상황 확인

발급절차 안내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① 온라인 과거자료제출 가능 기업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조회

2022-12-26

2023-01-26

검색

진행상황 결과

발급일자	진행상황	상세내용	중기확인결과	결과보기	비고
2023-02-16	소상공인유예검토	소상공인 유예검토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태로 오른쪽 단계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연도 작성방법 창업 이외 연도 작성방법			1단계 과거자료제출 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3단계 새로고침 오류확인

신청기업의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팝업(개인) - Internet Explorer

https://sminfo.mss.go.kr/sc/sq/SSQ027C1.pop

신청기업의 과거 규모확인 필수사항 입력

2020-12-31

2021-12-31

7.주업종

8.직전년 주업종

9.저장

10.닫기

<중기확인 결과>

[1단계 과거자료제출]이 끝나면 [홈]-[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진행상황확인]으로 다시 이동

1. [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클릭
2. 2020-12-31일, 2021-12-31 결산일자 기준
7.주업종, 8.직전년 주업종 선택
3. [저장] 클릭
4. [닫기] 클릭
5. [3단계 새로 고침] 클릭

중소기업확인서

진행상황 확인

발급신청

발급절차 안내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⑥ 과거자료제출 불가능 기업
 (과거 간편장부작성 中 원천세미신고기업)

기간조회

2022-12-26

2023-01-26

검색

진행상황 결과

발급일자	진행상황	상세내용	중기확인 결과	결과보기	비고
2023-02-16	소상공인유예검토	소상공인 유예검토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태로 오른쪽 단계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연도 작성방법 창업 이외 연도 작성방법			1단계 과거자료제출 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3단계 새로고침 오류확인

신청기업의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팝업(개인) - Chrome

tsmba.cretop.com/sc/sq/SSQ027C1.pop?pMAldConfNo=2202260000016&pPrgStat=65&pBzno=5611700274&bzno=5611700274&pVldPrdEddt=&pConfIdUsgCd=90&pAcc...

신청기업의 과거 규모확인 필수사항 입력

4 닫기

7 주업종 8 직전년 주업종 9 당해연도 판정결과 10 과거 재무제표 제출여부 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여부 12 당기매출액 13 전기매출액 14 전전기매출액 15 자산총액 16 상시근로자 수 등

3 저장

<중기확인 결과>

b. 소상공인 유예검토-> 당해연도 판단결과
 => 과거 재무제표 없고(간편장부대상), 원천세 미신고한 기업의 경우
 [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부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클릭
2. 2020-12-31일, 2021-12-31일 결산일자 기준
 ㄱ. 주업종, ㄴ. 직전년 주업종 선택 후
 ㄷ.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여' 체크
 ㄹ.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여' 체크 하고,
 ㄴ.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전전기매출액, ㄷ. 자산총액, ㄹ. 상시근로자 수 등
 수기 입력
 * 입력방법은 ? 참조 / 창업기업 여부는 자동 체크됨
3. [저장] 클릭
4. [닫기] 클릭
5. [새로고침] 클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아이디저장

로그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신청서 작성·제출 순입니다. STEP 01~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제출자료 조회

STEP 03 신청서 작성

STEP 04 진행상황 확인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챗봇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확인서 출력/수정' 클릭

공지사항

☆공시대상 기업 및 속속회사로 편입, 통지한 기업 확인...	2023-06-02
★★홈페이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2023-06-02
★★★홈페이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2023-05-16
☆ 긴급공시 ☆ 중수기업원형정보시스템 자료제출량 증...	2023-03-29
☆☆☆☆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2023-02-28
☆☆ 2023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	2023-02-28
☆☆ 2023년 소상공인 유예검토 안내 ☆	2023-02-28

자주하는 질문

소상공인 유예카드 진행상태로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전...	2022-07-11
금융 및 보험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자료제...	2022-04-12
기존 담당자가 사퇴 했구요. 사용하진 아이다는 비발민...	2022-05-20
사내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법...	2021-11-17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2021-05-12
공공매출증빙정보(스프)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2021-05-1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주에따라 협동조합(연합회)	2021-07-07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1811-6508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살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알려줘_중기씨



중소벤처기업부

KODATA

중소기업 생존 길잡이
기업마당

[운영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자동수집거부](#)
[저작권정책](#)
[▲ 정보의 재유출 및 자료제공은 할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KODATA

07237 서울시영등포구 의사당대로21, 코데이터빌딩, KoDATA
Copyright (C) KOREA RATING & DATA.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 안내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 문의처

확인서 출력 / 수정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및 발급용도를 수정 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조회

기간조회

2021.10.26

2023.01.26

검색

조회결과

1	선택	발급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확인결과
	☒	2023-01-26	0010-2023-403	2023-04-01 ~ 2024-03-31	소상공인

2

확인서 수정

국문확인서 출력

영문확인서 출력

공공입찰용으로 용도변경

확인서 수정

- [공공기관입찰용]으로 발급 완료된 경우 기관 연계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발급일 기준) 당일 연계

4

3

발급번호 : 0010-2023-403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명 : 원내세요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 123-45-12345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홍길동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원내세요중소기업
 유효기간 : 2023-04-01 ~ 2024-03-31
 용도 :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중소벤처
장관인

• 발급사체 및 발급주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청통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중소기업 중앙자료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국제기업 원상회복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기간의 지정제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1. 발급된 확인서 선택

2.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

*영문 확인서 사용을 원하면 확인서 수정에서 영문 정보 입력 후 '영문확인서 출력' 클릭

3. 팝업창에서 확인서 확인

4. 확인서 인쇄하여 사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발급절차 안내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확인서 출력 / 수정

5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및 발급용도를 수정 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조회

기간조회

2021-10-26

2023-01-26

검색

조회결과

1

☒발급일자
2023-01-26발급번호
0010-2023-403유효기간
2023-04-01 ~ 2024-03-31확인결과
소상공인

2

확인서 수정

국문확인서 출력

영문확인서 출력

공공입찰용으로 용도변경

확인서수정

· [공공기관입찰용]으로 발급 완료된 경우 기관 연계

확인서 변경 후

기업명	힘내세요중소기업
대표자명	홍길동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힘내세요중소기업 우편번호
지점사업자번호	
지점사업자주소	
용도	전채등업
확인서지점표기여부	☐ 예 ☒ 부
영문확인서 여부	☐ 예 ☒ 부
영문기업명	
영문대표자명	
영문주소	
영문지점사업장주소	

4

저장

※ 수정 가능한 항목 :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확인서 용도, 지점표기 여부. 영문확인서 여부

1. 수정할 확인서 선택

2. 확인서 수정 출력 클릭

3. '확인서 변경 후' 부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 수정

4. 저장

5.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수정하였으면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 02-6974-1322

THANK
YOU